

제156회(정례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면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규 모			비 고
	예 산 액	기정예산	간주처리	
합 계	236,698,940	214,788,074	21,910,866	
일 반 회 계	202,952,422	181,077,503	21,874,919	
특 별 회 계	33,746,518	33,710,571	35,947	
의료급여기금	63,575	27,628	35,947	
주차장	33,682,943	33,682,943	-	

II. 세입 간주처리 - 총 4회(27건), 21,910,86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합 계	(27건) 21,910,866	(2건) 500,000	(3건) 71,461	(1건) 20,000	(21건) 21,319,405
일반회계	(26건) 21,874,919	(2건) 500,000	(3건) 71,461	(1건) 20,000	(20건) 21,283,45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 35,947	-	-	-	(1건) 35,947

Ⅲ.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 명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9	20,710,596	9	20,710,596		-
시민행정위원회	7	2,285,326	7	2,285,326		-
재무건설위원회	2	18,425,270	2	18,425,270		-

Ⅳ. 검토의견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366억 9,894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219억 1,086만 6천원이 간주처리 되어 10.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9억 5,24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37억 4,651만 8천원으로 0.15%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예산은 7건에 22억 8,532만 6천원입니다.
-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지연 등으로 모두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로서 명시이월 요건에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총 7건 중 동청사 신축·보강공사 3건을 포함하여 4건(11억 9,552만 5천원)이 공사 미계약 또는 시공업체 선정도 하지 못하여 사업비 전액이월이 불가피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Ⅴ.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第40條 (歲出豫算의 移越) ①歲出豫算중 經費의 性質上 당해年度내에 그 支出을 끝내지 못할 것이 豫想되어 明示移越費로서 특히 그 취지를 歲入·歲出豫算에 명시하여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